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9-02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5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18누70068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

원고, 항소인 A 주식회사

[redacted]

[redacted]

피고, 피항소인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
제 1 심 판 결 [redacted]지방법원 2018. 10. 23. 선고 2018구합63687 판결

변 론 종 결 2019. 4. 10.

판 결 선 고 2019. 5. 1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7. 10. 18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9,140,34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9-02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11행부터 제6면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[고쳐 쓰는 부분]

1)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,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,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,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,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(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8두42559 판결 참조).

2) 갑 제2호증의 1 내지 4, 갑 제12, 13호증의 각 1,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, 원고는 2015. 7. 21.부터 2015. 10. 22.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D 지상 건축물 등(이하 '별건 부동산 등'이라 한다)을 취득한 사실, 피고는 2015. 9.경부터 2015. 12.경까지 사이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건 부동산 등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고,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, [redacted]시장은 2016. 12. 6.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다음 2017. 2. 15.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건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면제된 세액을 추징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사실, 원고는 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9-02

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이후인 2017. 3. 27.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17. 5. 16. 이를 채택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한편 원고는 2014. 12. 26.부터 2017. 6. 19.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,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취득세 등으로 합계 129,525,340원을 신고·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별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이전은 물론이고 위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·납부한 바 있고, [redacted]도지사가 2017. 5. 16. 별건 부동산 등의 취득과 관련된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·납부한 바 있음을 알 수 있다. 사정이 이와 같다면, 원고가 별건 부동산 등의 취득에 관하여 이루어진 피고 또는 경기도지사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.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관련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.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(원고는 "[redacted]도지사의 2017. 5. 16.자 과세전적부심사 채택 결정이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므로, 피고는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."는 취지로도 주장한다. 그러나 [redacted]도지사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별건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[redacted]도지사의 위 결정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경정청구거부처분에 어떠한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.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)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9-02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배광국

판사 김종기

판사 장철익